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도적 R&D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연구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안 제17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고기준에 따라 중도 탈락될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중단근거를 명확화

나.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 확대 (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정부지분기술료 사용에 대해 항목과 사용비율 중 사용비율을 폐지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 (안 별표2제1항나목1)호)

소속과 관계없이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계상을 허용하여 기관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별표2제1호제바목)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 등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 뿐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허용하고, 이 경우 협약 시 외국기관·외국인과의 계약을 제출하도록 함

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신설 (안 별표2제1호아목바호 및 별표 2제2호나목3)호의다 신설)

연구수행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

바. 간접비 내 연구준비중 등의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 (안 별표2제2호가목 3) 및 비고 2.)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제 수행 준비 상태인 박사후 연구자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을 허용

사. 간접비 내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신설 (안 별표2제2호나목 5) 신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간접비에 산재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아. 보안수당 신설 (안 별표2제1호차목 신설)

보안과제 수행에 따르는 제약을 고려하여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안수당 신설

자. 제재규정 개정 (안 별표6제2호가목 위반행위 가))

경미한 실수 또는 부정에 과도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 “이내” 규정을 도입하여 제재의 정도를 유연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탈락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경우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공기업“이라 한다)”를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를 “용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을 “출원·등록·유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자 보상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비율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비율 기준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2항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류한다”를 “분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인정되는”을 “있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장에게”를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중 “한다) 소속”을 “한다)”로, “인건비”를 “인건비.”로 하고, 같은 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학생인건비 계상의 대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바목의 사용용도란 중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같은 란 중 “외국에”

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로 하며, 같은 호 항목 아
목사용용도란의 제1호 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별표 2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보안수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

별표 2 제2호 항목 가목 3)을 4)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호 비고 제2호부터 6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호나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
간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 “박사후 연구자”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 항목 나목사용용도란의제2호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란에 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란 5)부터 7)을 각각 6)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표 별표 2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을 위한 비용

5)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의 [제2호 가목 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를 [제2호 가목 2], 4) 및 5)의 가)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4)”를 “4) 및 5)의 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 가) “3년”을 “3년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단, 이 영 제41조(기술
료의 사용)의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에 대해서 적
용한다.

제2조 (인건비 계상 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2제1항나목1)호의 개정 규정
은 2021.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u>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신 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1. <u>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u> 2. <u>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탈락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경우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결과를 확정해야 한다.</u>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

현행	개정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2. (생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생략) ② ~ ④ (생략)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생략)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u>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현행	개정안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용도</u> 및 <u>사용비율</u>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u>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u>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u>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u>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u>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u>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u>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u>	----- ----- <u>용도</u> 에 ----- -----. 1. ----- ----- <u>보상금</u> 2. ----- -- <u>출원·등록·유지</u> 3. ----- ----- <u>보상금</u> 4. ----- ---- <u>등</u> ③ <u>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자 보상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비율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비</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u>분류한다</u>.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생략) 나. 보호의 필요성이 <u>인정되는</u> 미래핵심기술 다.·라. (생략) ②·③ (생략)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u>을 기준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2항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 ----- ----- ----- --- <u>분류할 수 있다</u>.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있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u> ----- 다.·라.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 -----

현행	개정안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 <u>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u> ----- -----.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u>

[현행 별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 · 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 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 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중략 -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중략 -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 중략 -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3년
- 후략 -		

[개정안 별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만 「 <u>학술진흥법</u> 」에 따른 <u>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학생인건비 계상의 대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u>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u>연구개발과제협약</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u>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u>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u> 사)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아)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u>차. 보안수당</u>	<u>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u>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u>3) 제1호나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u> <u>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u> <u>다) 기간 동안의 급여</u> <u>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u> <u>4)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u> <u>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u> <u>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u> <u>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u>

	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u>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을 위한 비용</u>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u>5)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u> 6)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7)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8)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박사후 연구자”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5.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6.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8.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중략 -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 및 5)의 가)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중략 -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 중략 -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u>3년이내</u>
- 후략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 락 처	(044) 202 - 6954